

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조사 기간제근로자(업무보조원) 채용 공고

통계청에서는 「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조사」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. 9. 6.
통계청장

1. 모집인원 및 기간

근무지역	모집구분	모집인원	계약방법	채용기간	수당	비고
대전	기간제근로자 (업무보조원)	1명	근로계약	2023. 10. 4.~12. 31.	76,960원 (1일 기준)	

※ 신원조회 기간 및 업무상황에 따른 채용기간 및 채용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
2.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 담당업무
프랜차이즈조사 업무보조	◦ 프랜차이즈 조사자료 종합내검 및 집계결과 정리 등 업무 보조 ◦ 프랜차이즈 사후모집단 구축 업무 보조 등

* 근무장소: 통계청 산업통계과 (대전 정부청사 3동 15층)

3. 모집방법

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2차 면접시험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4. 응시 자격요건(모두 충족) 및 우대요건

1. 응시 자격요건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
- 엑셀 사용 가능자

※ 단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2. 우대요건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통계 또는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시 우대
 - ※ 통계 관련 자격증 : 사회조사분석사 1급·2급
 - ※ 전산 관련 자격증 :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, 빅데이터분석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,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·3급, 컴퓨터 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

5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9. 6.(수) 10:00 ~ 9. 15.(금) 18:00
- 접수 및 문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이메일
통계청 (산업통계과)	박재현 (042-481-6984)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산업통계과	pjh941008@korea.kr
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 - 지원서류, 자격증 등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

6. 심사일정
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3. 9. 19.(화) 15:00
 - 통계청 홈페이지 (<http://kostat.go.kr>) 채용정보에 공고
- 면접일시 및 장소 : 2023. 9. 21.(목) 10:00 ~ / 12층 소회의실(예정)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3. 9. 25.(월) 17:00

7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각각 1부(붙임서식 참조)
- ②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③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④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⑤ (선택사항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- ※ 「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」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한부모가족증명서, 다자녀(주민등록등본),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취업지원대상증명)는 제출 제외

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,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
【붙임1】

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

업무명	프랜차이즈조사	분야	업무보조원	응시번호	미기입
성명 (한글)			성별		
			생년월일		
연락처	핸드폰번호	() -			
	주소 (도로명)				
	e-mail				
일반 경력사항 (직무 관련 업무 경력)	기간	근무처	담당 업무		
	~				
	~				
통계청 경력사항	기간	근무처	담당 업무		
	~				
	~				
	~				
	~				
※ 경력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작성 예시 : (기간)연도별, (담당 업무)000조사 조사관리자 외					
자격사항	구분	자격증명	등록번호	취득일자	시행처
	전산 관련				
	기타				
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저소득층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유공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보육 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한이탈주민				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			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2023 년 월 일 성 명 : (서명) </div>					

주 1」 거짓으로 작성 시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 2」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붙 임 : 관련 증명서류(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, 국가유공자 증빙서류,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, 자격증 등)

【붙임2】

통계청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

업무명	프랜차이즈조사	분야	업무보조원	응시 번호	
-----	---------	----	-------	----------	--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(과거 경력관련 내용 등)

- 과거 경력, 일반경력(자료처리 경력 등) 등을 자유롭게 작성

(지원동기 및 포부 등)

- 지원동기 및 포부 등을 자유롭게 작성

2023 . . .

작성자

※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삭제

【붙임4】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사무(이용목적)	공동이용 행정정보	동의여부 (동의시 서명 또는 인)
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	장애인증명서	해당없음 / 서명 또는 인
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	국민기초생활수급자	
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	국가자격증	

2. 이용기관의 명칭 : 통계청

3. 정보주체(본인)동의사항 등

-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.
-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의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3 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) :
 전화번호 :

【붙임5】 1차(서류) 및 2차(면접) 전형 평가기준

■ 전형별 점수 기준

1차 서류전형			2차 면접전형
자격증	기타점수	경력, 자기소개서 등	면 접
5	5	90	100

※ 전형별 점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,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은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
1. 1차 서류전형(100점)

가. 서류전형 세부 평가 기준

(1) 자격증(5점)

자격증	점수	자 격 증	점수
		사회조사분석사 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, 빅데이터분석기사	
사회조사분석사 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 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 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	3		
정보기기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 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·3급, 컴퓨터 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	1		

※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(이에 준하는 자격증으로서 채용공고시 공고한 경우 인정 가능)

(2) 기타점수(5점)

항 목	점 수	내 용	비 고
저소득층	2	- 기초생활수급자 - 차 상 위 계 층 - 한부모가족 세대주 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	※ 여러항목이 중복 되는 경우 최대 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
다자녀	2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) ※ 주민등록등본 제출	
북한이탈 주민	2	-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
장애인	3	- 장애인등록증소지자	

(3) 경력,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 점수(90점)

나. 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 기준

- 면접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면접 응시 후 탈락 등으로 인한 지원자의 불만이 예상된다면 아래 기준에 의거 서류전형으로 1차 합격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음

< 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 >

채용인원(명)	서류전형 선발인원
1	5배수 까지
2	3배수 까지
3명 이상	2배수 까지

다.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

- 취업 지원 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
- 정성평가 점수 > 기타점수 > 자격증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인원을 선발
- 위의 기준으로도 순위 구분이 안 될 경우는 선발 최대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합격 처리

2. 2차 면접전형(100점)

가. 면접전형 세부 평가 기준

항목	탁월(A)	우수(B)	보통(C)	미흡(D)	불량(E)
지식·창의력 (전문지식)	25~21	20~16	15~11	10~6	5~0
성실·의욕·책임	25~21	20~16	15~11	10~6	5~0
설득·대화·발표	25~21	20~16	15~11	10~6	5~0
용모·예의·품성	25~21	20~16	15~11	10~6	5~0

3. 국가유공자 가점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

5점	10점
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 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	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 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	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
	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4.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
가.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
나. 동점자 처리기준

-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2차 면접점수는 위원장 > 위원1 > 위원2 순으로 고득점자
- 위 기준으로도 동점인 경우 1차 서류전형 고득점자
- 1차 서류전형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> 가점 > 자격증 순으로 고득점자

다.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